

강릉원주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

제8차 정기총회 의사록

- ☐ 회의명 : 강릉원주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8차 정기총회
- ☐ 소집 공고일 : 2022. 3. 23.(수)
- ☐ 총회 일시 : 2022. 3. 31.(목)
- ☐ 개최장소 : 강릉원주대학교 후생관 2층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국(서면결의)
- ☐ 대의원 총수 : 102명
- ☐ 서면결의서 제출 대의원 수 : 91명

☐ 총회 안건

의안 명
전차회의록 승인
제1호 의안 : 7기 종합 감사보고서 승인
제2호 의안 : 7기 활동 및 결산 승인
제3호 의안 : 7기 잉여(결손)금 처분(안) 승인
제4호 의안 : 8기 활동계획 및 예산(안) 승인
제5호 의안 : 임원(이사) 선출 승인

1. 총회 내용

가.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

- 의장(박성욱 이사장 이하 동일)이 사회자에게 성원 보고를 요청하다.
- 재적 대의원 102명 중 91명이 서면결의서를 회신했음으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.

나. 총회 적법성 확인 안내 및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임

- 의장이 회의의 기록과 확인을 위해 대의원 조재형을 서기로, 조합원 김태완(교수), 김연기(직원), 이채욱 선거관리위원 및 조합원을 확인자로 지명하고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수락하여 의사록 기명날인인으로 확정하다.

다. 전차회의록 승인

- 의장이 전차회의 의사록을 서면결의서와 함께 배포하였다.
- 대의원 88명의 동의로 승인하다.

의안 명	찬성	반대
전차회의록 승인	88명	1명

라. 제1호 의안 : 7기 종합 감사보고서 승인

- 의장이 이다솜 감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서면결의서와 함께 배포하였다.
- 대의원 90명의 동의로 승인하다.

의안 명	찬성	반대
제1호 의안 : 7기 종합 감사보고서 승인	90명	1명

마. 제2호 의안 : 7기 활동 및 결산 승인

- 의장이 7기 활동 및 결산 승인 자료를 서면결의서와 함께 배포하였다.
- 대의원 90명의 동의로 승인하다.

의안 명	찬성	반대
제2호 의안 : 7기 활동 및 결산 승인	90명	1명

바. 제3호 의안 : 7기 잉여(결손)금 처분(안) 승인

- 의장이 결산의 결과 손실금이 발생하였고, 이의 처리(안)를 서면결의서와 함께 배포하였다.
- 대의원 90명의 동의로 승인하다.

의안 명	찬성	반대
제3호 의안 : 7기 잉여(결손)금 처분(안) 승인	90명	1명

사. 제4호 의안 : 8기 활동계획 및 예산(안) 승인

- 의장이 8기 활동계획 및 결산 승인 자료를 서면결의서와 함께 배포하였다.
- 대의원 90명의 동의로 승인하다.

의안 명	찬성	반대
제4호 의안 : 8기 활동계획 및 예산(안) 승인	90명	1명

아. 제5호 의안 : 임원(이사) 선출 승인

- 의장이 임원(이사) 선출 승인 자료를 서면결의서와 함께 배포하였다.
- 대의원 90명의 동의로 승인하다.

의안 명	찬성	반대
제5호 의안 : 임원(이사) 선출 승인	90명	1명

자. 폐회 선언

- 의장이 서면결의서에 따른 모든 의결사항을 다루었음을 확인한 다음 강릉원주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22년 제8차 대의원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내용이 2022. 3. 31.(목)에 열린 강릉원주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8차 정기총회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장 및 의사록 확인자가 기명날인하다.

2022. 3. 31.

의장

박 성 욱



기명날인인

선거관리위원장

김 태 완



선거관리위원

김 연 기



선거관리위원

이 채 욱



※ 다음 페이지 '서면총회 한시적 허용'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	< 아 래 >	
○ (허용기간) 등 공문 시행일 ~ 추후 재공고시까지 ○ (의결안건)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, 결산보고서?감사보고서의 승인 등, 다만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*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 * 정관 변경, 임원 선출 및 해임, 조합의 합병?분할?해산 또는 휴업, 조합원 제명 등 총조합원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 - 다만, 정관 변경, 임원 선출의 경우, 생협의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서면총회 방식으로 진행하되, 해당 의사결정이 조합원의 의사에 기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필요* * 서면의결 전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참가하는 온라인 화상회의, 설문 등을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, 제3자가 아닌 조합원 또는 대의원 본인이 서면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 마련(예: 서면의결서를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주고받는 방법) ○ (사전절차) 서면총회 개최에 대해 사전에 조합원 의견수렴 및 이사회 의결 ○ (사후조치) 개최결과 공유(대면총회 시 추가보고 필요)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		

○ 총회를 서면 개최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, 향후 위원회에서 코로나 19 위기경보 단계 수준을 감안하여 별도 공지를 통해 종료할 예정입니다.

- 특히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절차를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. 끝.

출처 : [공문]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-2804(2021.12.28.)「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총회 연기 및 서면총회 관련 안내」